

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5. 28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'97. 5. 28
- 다. 상정일자 : '97. 6. 24 (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자 : 사회복지과장 이남철

나. 개정사유

○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"기타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"를 "기타수입"로 개정 (안 제2조)
- "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"를 "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"로 개정 (안 제3조 1항)
- "기부금"을 삭제 (안 제9조)
- "위원회심사를 받아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"를 "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."로 개정 (안 제12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민병항)

-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,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첨 부 :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(안)

의 안 번 호	97-91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5. 28

제 출 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"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"를 "기타수입도"로 개정 (안 제2조)
- "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"을 "자리의욕이 강한 자로서"로 개정 (안 제3조 1항)
- "기부금"을 삭제 (안 제9조)
- "위원회심사를 받아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"를 "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."로 개정 (안 제12조)

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기타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"를 "기타수입도"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"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"를 "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"로 한다.

제9조중 "기부금"을 삭제한다.

제12조중 "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."를 "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.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기금조성)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. 다만 영세 민생활 안정자금, 기타 사업에 따른 <u>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</u> 수 있다.	제2조 (기금조성)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기타수입도 - - - - - - - - - - - - - .
제3조 (융자대상)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행한다.	제3조 (융자대상) ① - - - - - - - - - -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.
제9조 (세입세출)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, 기부금,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 ② 생 략	제9조 (세입세출) ① - - - - - - - - - - 전입금, 상환금 - - - - - - - - - - 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 (감면조치) 기금은 융자받은 자 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 능력이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그 상환 의무 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.	제12조 (감면조치) -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 의무 를 감면할 수 있다.